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2.
제출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도로점용료 표준요율 산정방식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고, 표준점용료 현실화를 억제하는 법 규정이 존치함에 따라 도로점용료 현실화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공익사업에 대하여 높은 감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현실화에 기여하기 위함.
- 도로법 전부개정(2008. 3. 21)에 따른 인용법률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

2. 주요내용

- 가. 점용료의 감면 규정 중 「도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함(안 제8조)
- 나. 인용 법률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3. 근거법규 : 「도로법」 제4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2008. 10. 31 ~ 11. 20)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도로법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6조** 중 “의한”을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에 따라”로 하고, “감면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규칙이”를 “영 제26조의5 제1항에서”로 하고, “면제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를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규칙”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감액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감면한다”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른 -----.</p>
<p>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로써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도로관리청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생략)</p>	<p>제2조(도로점용허가) -----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p> <p>-----.</p> <p>1~3. (현행과 같음)</p>
<p>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시설의 신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p>	<p>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p> <p>--- 영 -----.</p> <p>-----.</p>
<p>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 41조 제2항에 따른 -----.</p> <p>--- 따라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도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 구청장은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한다.</p>	<p>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 -----.</p> <p>② 제1항에 따라 ----- ----- ----- ----- ----- ----- -----.</p> <p>③ 제2항에 따른 ----- ----- -----.</p> <p>④ 법 제84조에 따라 ----- ----- ----- ----- ----- ----- --.</p> <p>⑤ (현행과 같음) ⑥ ----- 따른 ----- ----- ----- ----- ----- 다.</p>

현 행	개 정 안
<p>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p>	<p>2. ----- ----- 「도로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p>	<p>3. ----- ----- ----- 「국토해양부령」 ----- ----- 감면할 수 있다.</p>
<p>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p>	<p>4. ----- -----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70)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11. 26(수)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08. 11. 29(수)
- 위원회상정 : 2008. 12. 8(월)

3.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 도로점용료 표준요율 산정방식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고 표준점용료 현실화를 억제하는 법 규정이 존치함에 따라 도로점용료 현실화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공익사업에 대하여 높은 감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현실화에 기여하기 위함.
- 도로법 전부개정(2008. 3. 21)에 따른 인용법률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함.

나. 주요골자

- 점용료의 감면 규정 중 「도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함(안 제8조)

- 인용 법률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함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4. 근거법규

- 「도로법」 제41조, 제42조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2008. 10. 31 ~ 11. 20)

6.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방영환)

-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전부개정(2008. 3. 21)에 따른 인용법률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공익사업에 대하여 높은 감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현실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인 「도로법」 제42조의 규정에 “감면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반면, 우리구 조례는 “감면한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현행 조례규정상 점용료 50% 감면대상인 전주의 경우 향후 조례개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점용료 수

입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과, 전주가 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는 관계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